
문서번호 : 17-5-사무-4
수 신 : 제 언론사
발 신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 목 : [민변][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전송일자 : 2017. 5. 30. (화)
전송매수 : 총 19 매(의견서 재중)

[보도자료]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

▶ 일시 및 장소 : 2017. 5. 31. (수) 10:00,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 기자회견 순서

사회 : 강문대 사무총장

- | | |
|---------------------------------|---------|
|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김남근 변호사 |
|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외 블랙리스트 수사) 사건 | 김종휘 변호사 |
|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 사건 | 윤복남 변호사 |
| (4) 국정원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김준우 변호사 |
| (5)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 송아람 변호사 |

정론직필을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를 청산하고, 진정한 민주사회를 염원하는 촛불민심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고, 새로운 정권을 창출해 냈습니다. 그러나 촛불민심이 요구하는 진정한 민주사회와 적폐청산은 단순히 정권교체로만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각종 부정과 비리로 인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서 박근혜와

그 공범자들이 그간 저질러 왔던 폭압과 공작 정치에 대한 철저한 수사 와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 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범자들에 대한 수사 및 공판 대응과 범죄수익 환수 추진 TF(약칭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는 의견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합니다.

‘박근혜 사법심판 TF’에서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위 5대 과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해서 민변은 검찰이 좌고우면하지 말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 와 공소제기 라는 검찰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기 를 요구합니다.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첨부 1. 박근혜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2017년 5월 3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정연순



<박근혜 정권 검찰의 5대 부실수사에 대한 재수사 촉구 의견서>

- 새 정부 검찰의 '국정농단 5대 수사 과제'를 제시한다

작년 겨울 담대하게 타올랐던 촛불민심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구속되고, 국민들의 염원 하에 새 정부가 구성되었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어두운 과거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한 작업은 필수불가결하다. 특히 이 가운데서 구 박근혜 정권 시절 제기된 폭압과 공작 정치에 관련하여 시민 사회 단체들의 각종 고소, 고발과 언론의 의혹보도는 많았는데, 정작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인적 청산 이외에도 과거의 잘못을 스스로 도려내고, 이를 해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우리 모임에서는 과거 박근혜 정권 하에서 이뤄진 공작정치나 의혹사건에서 새 정부와 검찰이 수사과제로 삼아야 할 5대 사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수사과제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면으로 충실한 수사를 뚜벅뚜벅 진행하는 것만이 검찰이 환골탈태하여 바뀌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모임이 제시하는 검찰 재수사 대상 5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 (2) 청와대 공작정치(문화계 블랙리스트 이외) 사건
- (3) 삼성, 롯데 외 주요 재벌의 정경유착 사건
-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살수차 살해 사건

그럼 각 과제별로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과 대상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1. 청와대 증거인멸 및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수사촉구

가. 청와대의 광범위한 증거인멸

- (1) 박근혜 정부로부터 문재인 정부로의 인수인계 자료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업무 관련 자료를 파괴하거나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 박근혜 정부가 문재인 정부로 인수인계 해 준 업무 자료는 A4용지 10장이 전부라고 한다. 노무현 정부가 2008년 당시 업무 매뉴얼 552개, 정책백서 77권, 보고서·지시사항·일정일지 5만6970건을 이명박 정부에 넘긴 것에 비하면 인수인계한 자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2017년 3월 전자기록물 934만 건을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고, 이 가운데 10만여 건을 최대 30년 동안 볼 수 없는 ‘지정기록물’로 봉인했다. 또한 청와대의 지난해 비품구입 목록에는 문서파쇄기 26대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정기록물로 봉인하지 않은 자료는 파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박근혜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범죄행위와 세월호 참사의 늦장대응

이처럼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모두 파괴하거나 봉인한 것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증거의 인멸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자체가 중대한 범죄이자 국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고위 공직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박근혜 전 대통령, 김기춘 전 비서실장,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박근혜 정부의 요직을 지낸 고위공무원들이 뇌물죄외 직권남용죄 등에 연루되어 구속된 것만 보아도 청와대가 각종 권력형 범죄의 온상임을 알 수 있다.

2014. 4. 16.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을 충분히 구조할 수 있었음에도 정부의 늦장 대처로 304명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사건 당일 7시간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을 하였는지 지금까지도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대통령 탄핵사건에서도 숨기고, 변명하기에만 급급했다.

이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조직적인 범죄행위를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의 재난대처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그런데 청와대는 그 동안의 업무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30년간 봉인해 버리고 남은 문건들은 조직적으로 파쇄 하였다. 이러한 자

료 파쇄 및 은닉은 범죄증거의 인멸로 밖에 볼 수 없다.

(3) 박영수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가 거짓으로 밝혀졌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7. 2. 3. 박영수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에 대하여 군사·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집행이 불가하다면서 특검팀의 진입을 거부하였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금, 군사·공무상 비밀이 모두 문재인 정부로 무사히 인수인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료 자체가 남아있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과거 2017. 2. 3.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거부한 이유도 군사·공무상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범죄증거를 은닉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 우병우 부실수사 사건

(1) 우병우의 범죄혐의

우병우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비서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재임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은 정부 고위인사들의 인사검증, 국민여론 및 민심동향 파악, 법률문제 보좌 등 포괄적인 업무를 하면서 사정기관과 공안기구를 지휘하는 역할을 했다.

그러나 우병우 민정수석의 정부 고위인사들에 대한 인사검증이 실패하였음은 현재 구속된 박근혜 정부 공직자들의 명단만 보아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우병우 범죄의혹의 핵심은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개입에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얼마나 관여하였는지 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나누면 우병우는 ① 문체부·공정위·외교부 공무원 표적감찰 및 인사 부당개입, KT&G사장 후보 등 민간인 불법사찰, 세월호 수사방해, K스포츠클럽사업 관련 감사 및 중단에 관한 직권남용혐의와 ② 미르·K스포츠재단 등 최순실 국정농단 목인에 관한 직무유기 혐의, ③ 국회국정감사에 관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④ 가족회사 정강 등에 관한 횡령 및 배임죄 혐의를 받고 있다.

(2) ‘우병우 부실수사’ 수사 책임자와 조사대상의 부적절 회동

2017. 4. 17.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본부장으로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추가·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을 뒤로하고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 이로부터 사흘 후 ‘국정농단’ 수사의 조사자와 피조사자 관계였던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노승권 차장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7명과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 등 법무부 검찰국 간부 3명이 만찬 모임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50만 ~ 100만원의 돈봉투가 서로 오갔다.

이처럼 검찰은 부실한 수사로 우병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추가·보완 수사는커녕 수사 대상자와 만찬을 즐기며 돈봉투를 서로 주고받았다. 이는 우병우와 검찰 수뇌부의 끈끈한 관계를 증명하는 사건이자, 검찰이 나서서 우병우의 범죄혐의를 덮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다. 소결론 - 검찰 수사의 필요성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검찰의 우병우에 대한 부실수사는 증거인멸죄 및 직무유기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청와대가 과거 및 이관한 자료를 복구 및 열람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실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가수사를 촉구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범죄관여행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한다.

2. 청와대의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촉구

가. 고 김영한 업무일지를 통해 드러난 청와대 공작정치의 정황

박영수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하여 김기춘, 조윤선 등을 구속 기소하였지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외에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정치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고 김영한 업무수첩을 통해 드러난 청와

대의 공작정치와 관련하여 청와대가 개입한 분야, 구체적 의혹, 그에 따른 적용 혐의는 다음과 같다.

(1) 언론에 대한 사찰과 부당통제

○ KBS 이사회 사장 임명에 개입

- 공영방송인 KBS 인사에 개입함으로써, 이사회 이사들의 정당한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

○ 세계일보의 정윤희 문건 보도와 공작 및 비선실세 의혹을 보도한 일요신문과 시사저널 등 정부비판 보도에 대한 보복지시

- 청와대는 정윤희 문건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며 세계일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고, 위 문건의 유출만 수사하여 조용천과 박관천을 공무상기밀누설죄로 고소하였으며, 통일교 계열사를 세무조사함으로써 직권남용 혐의.
- 정윤희 문건에 대한 경찰의 재조사가 시작되었고, 문건의 당사자인 정윤희가 재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를 통해 청와대의 언론사에 대한 보복지시 정황까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함.

○ 산케이 신문의 세월호 7시간 대통령 보도와 산케이 지국장 기소 공작

- 산케이신문 처리를 지시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함으로써,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

(2) 사법부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법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상고법원 설치 등 법원의 현안을 이용한 법원 길들이기. 검찰총장, 대법원장 등 고위직에 대한 사찰,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여 영장청구 등에

활용하거나 정권에 비판적인 판사를 배제하는 등 사법권독립의 침해함으로써, 직권남용 등 혐의.

○ 재판결과에 청와대가 개입한 정황

- 통합진보당 해산사건과 관련한 여론전 교사 및 헌법재판소 내부 논의사항 쟁점을 미리 파악하는 등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직권남용 등 혐의.

○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사찰과 공작

- 대한변호사협회 선거에 개입하거나 집행부 구성원에 대한 사찰, 통합진보당 해산과 세월호사건 변호사들의 성향 파악, 보수 변호사단체와의 커넥션 이용 등을 통한 삼권분립, 법치주의원칙을 훼손함으로써 직권남용 등의 혐의.

○ 민변에 대한 탄압을 청와대에서 지휘

- 민변 집행부에 대한 사찰 및 민변 변호사의 수입내역과 민변자금 등을 사찰하고, 일부 변호사에 대한 징계공작을 하는 등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의 혐의.

(3) 국정원을 통한 고위공직자와 정치인,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 사찰

○ 국정원이 장·차관, 공공기관장, 정치인, 종교계와 언론, 민간인 사찰

- 총리실 TF와 국정원이 협력하여 경찰과 국정원이 팀을 구성해 사찰하도록 지시하였으며, 국정원만이 아니라 국세청, 공정위 등도 사찰과 공작에 동원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 제3조 위반 및 제18조, 제19조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

(4) 교육계 사찰과 공작

○ 전교조가 지지하는 교육감에 대한 사찰과 공작

- 진보 교육감의 활동을 통제할 시스템의 구축을 시도했으며, 인사에 대한 사찰 및 정치적 공격을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 등 혐의.

○ 전교조의 범외노조화

- 전교조의 동향파악, 교육현장에서의 이념대결 조장, 비합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전교조에 대응 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의 혐의.

(5)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활동을 축소·은폐하려는 청와대의 개입과 공작

○ 카카오톡, 아고라 등에 대한 감청 협조 등 사찰과 공작 및 인터넷 비판 글에 대한 검열강화

- 극우단체를 통해 세월호특별법 반대운동 및 카카오톡 유포를 활용하도록 지시한 직권남용 등 혐의.

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통해 밝혀진 고 김영한 업무일지의 신빙성

- (1)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을 근거로 김기춘, 조윤선 등이 기소된 사건이며, 현재 재판이 진행되면서,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진실성을 담보하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다.
- (2) 또한 고인의 재직기간과 이 사건 업무일지의 작성기간이 거의 일치하는 점, 업무일지에 기재된 각 일자의 상황에 맞는 각종 지시사항 등 당시 전후 상황이 일치하는 점, 김기춘의 당시 비서실장으로서의 지위 등 업

무일지의 작성 시기, 내용, 당시 전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고 김영한 업무일지 각 기재내용의 신빙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다. 소결론 - 검찰 수사의 필요성

김기춘과 청와대가 저지른 공작정치의 직접적 피해자들이 ‘고 김영한 업무일지’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수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나, 정작 공작정치 중 일부인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졌을 뿐, 전 사회분야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공작 정치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헌정질서 유린과 국정농단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축으로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가 중심이 된 공작정치의 민낯을 파헤쳐 역사적 교훈으로 남겨 다시는 이러한 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작정치에 대한 진상규명과 공작정치의 청산을 위해, 철저한 수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3. 정경유착 근절을 위한 삼성, 롯데 외 재벌총수들에 대한 수사촉구

가. 정경유착 관련 범행사실

- (1) 2015. 7. 20. 박근혜는 재벌들로부터 출연금을 받아 최순실이 장악하는 방식으로 문화·스포츠 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 비서관 안종범에게 10대 그룹 회장들과의 단독 면담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 안종범은 박근혜 승인을 받아 삼성 등 7대 그룹을 최종 선정했고, 2015. 7. 24.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CJ그룹 회장 손경식,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 다음 날에는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와 박근혜와의

단독 면담이 이루어졌다.

- (2) 안중범은 단독 면담이 있기 전 각 그룹 회장들에게 ‘각 그룹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박근혜는 단독 면담 자리에서 위 재벌총수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민원해결에 대한 대가로 ‘문화·스포츠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니 적극 지원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으며, 단독 면담이 있는 후 박근혜 지시를 받은 안중범은 전경련 상근 부회장 이승철에게 재단설립 추진을 지시, 최순실도 그 무렵부터 재단 임원진 구성 등 준비에 착수했다.
- (3) 2015. 10. 19. 한중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 체결이 필요하다는 최순실 의견을 받아, 박근혜는 준비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도록 안중범에게 지시했고, 삼성 이재용을 비롯하여 단독 면담에 응했던 재벌총수들은 천문학적 규모의 출연금을 지원하여 2015. 10. 26. 미르재단이 설립되었다. 2015. 12. 11.경 추가로 스포츠재단을 설립하라는 지시가 있자 재벌총수들은 또 다시 출연금을 납부하여 2016. 1. 13.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었다.
- (4) 이전까지 대기업 총수 사면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던 박근혜는 단독 면담 추진 직전인 2015. 7. 13. 종전과 달리 사면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던데다 이내 SK 김창근 회장과 단독 면담을 한 후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거나, 삼성 경영권 세습을 위한 편의를 봐주거나, 혹은 2016. 1.경에는 재벌들에게 우호적인 법률안(노동법 개정, 원샷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을 통과시키도록 국회를 압박하는 등 대통령 권한행사라는 형식을 빌려 실질적으로는 재단법인 출연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했다.

나. 삼성과 롯데에 대한 기소

- (1) 검찰은 미르, 케이스포츠재단 설립 관련 출연행위가 박근혜, 안중범 등이 주도한 직권남용 또는 강요로부터 비롯된 행위로 보았으나, 특점은 재벌 중 삼성 그룹의 출연금이 뇌물에 해당함을 들어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 (2) 검찰은 특검 해산 이후에도 종전과 같이 재벌들의 재단설립 출연행위를 뇌물죄로 보지 않았고, 다만 롯데그룹의 경우 면세점 선정과 관련한 자금수수행위가 뇌물죄에 해당함을 들어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만을 박근혜와 함께 뇌물죄로 기소하였다. 유사한 혐의가 있는 SK에 대하여는 약속만 있었을 뿐 실제 자금수수가 없었다는 이유를 들어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다. 소결론 - 검찰 수사의 문제점과 추가 수사의 필요성

- (1) 검찰은 재벌총수가 피해자라는 생각에 간혀 특검이 거둔 수사성과 이상의 진전을 거두지 못했다. 박근혜와 재벌총수의 단독 면담이 있고, 재벌들이 갖고 있던 당면과제가 대화 주제였으며, 박근혜 지시에 따른 민원 해결 노력에 대한 대가로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대한 엄청난 규모의 출연금(현대 128억 원, SK 111억 원, CJ 13억 원 등)이 지원된 사실에 관한 다수 증거가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수사 없이 기존과 동일한 결론을 내린 검찰 수사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
- (2) 경영권 승계 대가로 삼성이 미르·케이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한 것을 뇌물로 보아 이재용 부회장을 뇌물공여죄로 기소하면서 다른 재벌들의 출연금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은 법리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기소와 조화되기도 어렵다. 나아가 검찰은 SK그룹이 케이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지원이 무산된 점을 들어 불기소처분을 하였으나, 언론보도에 따르면 SK는 80억 원 지원을 거절하되 30억 원이라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음이 밝혀졌고, 따라서 뇌물을 주기로 약속만해도 처벌하는 형법 제133조 제1항에 따라 SK그룹 최태원 회장에 대한 추가수사도 시급하다.
- (3) 정경유착은 국민의 안전과 공공복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할 국가권력을 특정 재벌이 이익을 위해 사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과 탈세, 부정부패, 법과 정의의 실종을 낳아 그 자체로 헌법이 명시한 ‘사회적 폐습과 불의’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군사정권이 범한 ‘일해재단 사건’의 부활이며, 국민들의 염원인 적폐청산 실현을 위해 재벌총수들에 대한 추가수

사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4. 국정원의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 사건 수사촉구

지난 5. 1. <한겨레21>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정원은 직원인 박모씨를 통하여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김성욱 현 한국자유연합 대표의 계좌에 민간조직 ‘알파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2천만원을 송금하면서 각종 여론조작 및 민간단체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겨레21>에서 입수한 증거는 단순한 증언이 아니라 각종 전자우편 등을 통한 업무지시 내용이 뚜렷하게 드러난 점에서 수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각종 증언과 관련 자료에 따르면 국정원은 ‘알파팀’을 2008년 12월부터 2010년 2월까지 관리하였다.

가. 국정원의 온라인 여론조작 등에 관한 업무지시

(1) 우선 <한겨레21>에서 입수한 증거에 따르면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대단히 구체적인 수준에서 온라인상의 여론조작을 위한 업무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 국정원은 2008년 말부터 2009년 초까지 다음 아고라 서비스에 야당·언론·노동조합·시민사회에 대하여 비판적인 글을 작성할 것을 ‘알파팀’에 지시하였다. 국정원은 시기별로 구체적인 게시글의 내용에 대해서도 주문하였는데 대표적으로는 △김대중 헛소리 비판, 이외수 <경향신문> 헛소리 비판(2009년 1월 2일), △MBC-민주당-민노당 비판에 집중(2009년 1월 8일), △홍준표 좌익에게 모욕당한 칼럼(2009년 1월 16일) △전교조·민주노총 비판(2009년 2월 12일) △천지성 판사(천정배 의원의 딸) 집중 비판(2월 17일) 등이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사안에 대해 국정원이 여론조작에 개입한 것은 국내정치에 관여를 금지하고 있는 국정원법을 전면적으로 위배하였거나, 혹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

(2) 국정원은 ‘알파팀’이 작성한 게시글에 따라서 원고료를 차등 지급하였는데, 단순히 글쓰기가 아니라 월 200개의 인터넷 게시물 작성 및 개별 게시물에 대한 클릭 수 1000개 이상, 추천 수 15개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기본 요건으로 제시하였다. 또 알파팀 팀원들에게 다음 아

고라 뿐 아니라, 다음 블로그의 개설도 주문하였다.

- (3) 아울러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온라인 활동 뿐 아니라,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에 지속적인 독자투고를 주문하였으며, 해당 매체에 글이 게재될 경우에 별도의 특별고료를 지급해주겠다는 지시도 한 정황이 드러났다.
- (4) 한겨레21이 지급한 각종 증거에 따르면 국정원은 ‘알파팀’ 뿐 아니라 여러 민간조직을 관리하면서 유사한 업무지시를 하며 국내정치에 개입한 정황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나. 국정원의 민간단체 사찰에 관한 업무지시

- (1) 국정원은 ‘용산참사’ 당시 촛불집회가 확산될 여지가 보이자, 시위현장에 잠입하여 ‘현장채증’을 하도록 업무지시를 한 것도 파악된다. 특히 국정원은 용이한 현장채증을 위하여 ‘모토로라 스타텍’ 형태의 촬영장비를 지급하여 집회에서 벌어지는 충돌 장면 등을 집중적으로 채증할 것을 주문하였다.
- (2) 아울러 국정원은 ‘알파팀’에게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지시한 정황이 파악된다. ‘알파팀’은 2009년 5월에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들을 ‘좌익단체’로 간주하여 각 단체별로 사찰을 진행하였다. 각 사회단체의 대표를 비롯한 임원현황, 주요성명서 및 언론보도자료를 모두 모아서 활동현황을 파악하려고 시도하였다. 또 ‘알파팀’은 각 개별단체가 정부로부터 합법적으로 받고 있는 각종 사업지원금 현황도 사찰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찰 대상에는 우리 모임도 포함되어 있다.

다. 소결론

국정원이 민간조직 ‘알파팀’을 통해서 여론조작을 시도하고,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사찰을 수행하도록 지시하며 그에 대한 대가로 정부예산을 사용한 것은 상식적으로도 민주주의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의 권한 바깥의 일이다. 또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국정원법

에도 위반된다고 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모임은 국정원의 민간사찰 및 여론조작 지시 업무정황이 국정원법 제18조 정치관여죄, 동법 제19조 직권남용죄이나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내부 제보를 통해서 알려진 ‘알파팀’ 외에도 국정원이 여론조작 및 민간사찰 등 다양한 정치개입 및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활동이 있었을 개연성도 상당히 높은 바, 이에 관해서도 광범위하면서도 강도 높은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5. 경찰의 고 백남기 농민 직사살수 살해사건에 대한 수사촉구

가. 범죄사실

- (1) 각 지역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결성된 민중총궐기 투쟁본부는 2015. 11. 4.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정책 개악,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소홀, 밥상용 쌀 수입 결정 등 박근혜 정권의 각종 실정을 비판하고 사회 각계각층의 12대 요구안을 제시하는 “민중총궐기” 집회를 2015. 11. 14.에 개최할 것을 선언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집회 개최 전부터 위 집회를 대규모 정치과업·불법집회로 규정하고 전례 없는 강경대응에 나섰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은 대규모 집단사태로 치안질서가 극도로 혼란할 때와 계엄 선포 전 등의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발령할 수 있는 ‘갑호비상령’을 집회 개최 열흘 전인 2015. 11. 4. 발령하는 한편, 차벽 설치를 예고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은 집회 하루 전에 ‘불법시위’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취지로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법무부 등 5개부처장관이 공동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집회참가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집회의 자유를 통한 집단적인 의사형성의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켰다.

- (2) 고 백남기 농민(이하 ‘고인’으로 약칭)은 박근혜 정권의 밥상용 쌀 수입결정을 저지할 목적으로 15:00경부터 위 집회에 참석하였다. 집회 당

일 경찰은 전국경찰경력 248개 중대, 2만 명 이상의 인원과 차벽·살수차 등 각종 경찰장비를 동원하여 집회 참가자들의 광화문 방면 행진을 차단했다. 고인은 밥상용 쌀 수입 저지를 주장하는 농민 대오와 함께 17:00경 이 사건이 발생한 종로구청입구 앞 사거리에 도착했다. 경찰은 농민 대오가 정부의 밥상용 쌀 수입 결정에 항의하는 의미로 메고 온 상여를 정조준 직사살수로 파괴하는 등 초반부터 살수차를 사용하며 집회 참가자를 위협했다.

(3) 경찰의 무차별 직사살수가 반복되던 도중, 고인은 18:56경 종로구청입구 앞 사거리에서 경찰 살수차(충남살수제9호)의 직사살수에 머리 부분을 강타당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구체적인 경과는 다음과 같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56:11 살수차 피해자(고인)의 얼굴정면을 향하여 분사(위에서 아래 45도 방향으로 정조준) ○ 18:56:12 살수에 의하여 피해자가 머리를 숙이면서 바닥에 뒤로 넘어짐 (넘어지는 과정에서도 얼굴을 향하여 정조준하여 살수) ○ 18:56:12~17 넘어진 피해자 얼굴을 향하여 살수 계속, 1미터 뒤로 쓸러 내려감. ○ 18:56:17~32 넘어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살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근처에 근접하여 현장을 보고 있던 사건의 노홍섭이 살수를 막아 내기 위하여 쓰러 넘어진 위 백남기의 얼굴을 정면으로 하고 물대포 차량을 등진 상태로 살수를 막고 있었음. 그럼에도 계속하여 살수 함 ○ 넘어진 피해자는 코와 입에서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상태가 됨. |
|--|

고인은 당일 19:45경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외상성 경막하출혈” (traumatic SDH)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았으나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되었고 위 상해로 인해 2016. 9. 25. 사망하였다.

나. 가해자 고발

민변은 사건 발생 당일부터 직사살수 피격순간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등을 확보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변호단을 구성, 고인의 자녀인 백도라지 등 34명의 고발인을 대리하여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구은수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사건 발생 지역인 종로구청 앞 사거리의 경찰 책임자인 신윤균 제4기동단장, 직사살수를 직접 조작

한 한석진·최윤석 등 사건에 관계된 경찰관들을 고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예비적 죄명 업무상과실치상)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2015. 11. 18.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다. 검찰의 의도적 수사지연과 재수사의 필요성

- (1)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이 사건은 범죄사실 자체가 단순하며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 또한 충분히 확보되었을 뿐만 아니라 미처 확보되지 못한 증거도 그 소재가 뚜렷하여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었다면 결론을 내리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이었다.

먼저 변호단은 사건 초기에 범죄사실 및 급성 경막하출혈 발생과의 인과관계까지 입증할 수 있는 직사살수 피격상황이 촬영된 사진·동영상, 살수차의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들을 빠르게 확보하여 검찰에 제출하였다. 또한 가해자인 경찰의 통제 하에 있어 접근이 어려웠던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물리적 위험성 등이 고인의 부검 국면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되는 등, 살수차에 의한 직사살수의 위법성을 판단할만한 자료들도 충분히 공개되었다. 아울러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2016. 9. 개최한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경찰 감찰부서가 사건 발생 당일 신윤균·최윤석·한석진을 조사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겨두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검찰이 수사의지만 있다면 피고발인들의 초기 진술도 충분히 확보 가능한 상황이었고, 살수차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 (2)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지 500일이 지나도록 한 차례의 고발인 조사만을 진행한 채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유가족·대책위·변호단은 2017. 3.경 수사검사와 항의성 면담을 가졌으나 수사검사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만 반복할 뿐,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2016. 6.경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32차 UN 인권이사회에서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말 뿐이었다. 검찰의 수사지연은 사건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사건이 가져올 박근혜 정권에 대한 법적·정치적 책임추궁을 방지하기 위한 의도를 띤 것으로밖에 생각되지 않는다.

- (3) 이 사건은 정치적 반대세력을 절대 용납하지 않았던 박근혜 정권의 비민주성과 정권의 안위를 위해 폭력진압으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파괴한 경찰의 공권력남용이 낳은 참혹한 국가폭력이다. 그러나 검찰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수사지연으로 사건의 진상규명을 사실상 거부해왔다.

지연된 정의는 그 지연된 시간만큼의 불의다. 검찰이 수사를 미루는 동안, 가해자인 국가와 경찰관들은 피해자인 유가족의 사과요구를 무시하고 도리어 그들을 조롱했다. 당시 경찰 총 책임자였던 강신명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화롭게 퇴임하였으며, 주요 책임자 중 하나인 신윤균은 영등포경찰서장으로 영전했다. 직사살수를 직접 조작한 한석진과 최윤석은 피해자 시늉을 하며 청문회에 비공개로 출석하는 호사를 누렸다. 그들은 청문회에서 피고발인 신분을 방패로 삼아 진술을 거부하고 집회에서 발생한 일부 폭력행위를 빌미로 고인을 살해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은 고인 사망 이후 검·경을 동원하여 고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시도했다. 직사살수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이미 명확히 드러난 상황에서 고인의 사체에 대한 부검을 시도한 박근혜 정권의 의도는 민주열사들의 사체를 부검하여 사인을 조작했던 군사독재 정권의 그것과 닮아있었다. 다행스럽게도 고인에 대한 부검시도는 좌절되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유가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엄청난 것이었다.

이제 많은 것이 바뀌었다.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구속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대규모 집회마다 차벽과 살수차를 동원했던 경찰은 집회에 경찰·차벽·살수차를 동원하지 않는 ‘3무 원칙’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지연의 원인이 되었던 박근혜 정권은 국민적 심판을 받았고, 검찰 입장에서 더 이상 수사의 결론을 미룰 이유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고인에 대한 직사살수 살해사건의 가해자들을 처벌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에서 발생한 최악의 국가폭력사건을 올바르게 기억하고 공권력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하루빨리 이 사건에 대한

수사가 엄정히, 그리고 신속하게 진행되어 고인의 명예가 회복되고 유가족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며 지연된 정의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란다.